

[일련번호 : 91]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구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등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기 조문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3년 안양천 가족정원 물놀이장 운영물품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 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나 해당 확인서에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의 법인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 하는 등 관련 서류 검증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관련서류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